

2016년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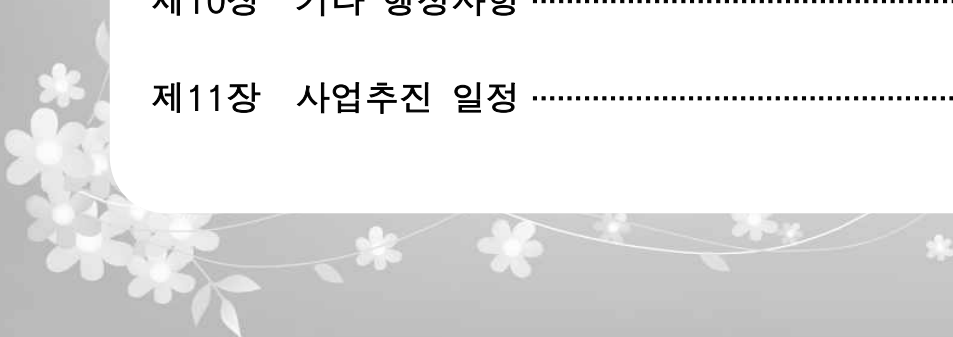
2016. 1.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주요 변경사항 ...	3
제 1장 적용 범위 .....	11
제 2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개요 .....	15
제 3장 신청자 접수 .....	25
제 4장 대상자의 선발 .....	31
제 5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등 .....	49
제 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55
제 7장 사업의 시행 .....	67
제 8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	71
제 9장 사업의 지도·감독 .....	81
제10장 기타 행정사항 .....	95
제11장 사업추진 일정 .....	101



# Contents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	105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108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111
【붙임 4】	'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	112
【붙임 5】	'16년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	113
【붙임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	121
【붙임 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교육 일지 .....	123
【붙임 8】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125
【붙임 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	126
【붙임 1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127
【붙임 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	130
【붙임 12】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131
【붙임 13】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 .....	135
【붙임 14】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 .....	136
【붙임 15】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및 결과 통보서 .....	137
【붙임 16】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	138
【붙임 1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	140

#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주요 변경사항





#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사항

## I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10월(상·하반기 각각 4개월)
- 사업규모 : 9,000명(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사업비 : 44,304백만원(국비 22,152백만원, 지방비 22,152백만원)
- 회 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대상사업 : 4대 유형 8개 사업

### □ '16년 중점 추진방향(취약계층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생산적 일자리)

- “마을일자리사업”으로 정체성 확립
  -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
-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발굴·정립
  - 마을공방 등 공동작업장 육성 및 마을기업·지역기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의 다양성·지속성·자립성 증진
-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 제고
  - 취약계층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사업유형 조정·근로시간 연장 및 숙련·취업교육 지원 등 근로의욕 고취,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연계 강화

## Ⅱ 2016년 종합지침 주요 개정사항

### □ 참여자 측면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임금 인상, 청년일자리 확대 등

#### ○ (근로시간 연장)

- 주 26시간(5.2시간×5일) → 주 30시간(6시간×5일)

\* 월 임금수준 : 75만원 → 92만원으로 23% 상승

#### ○ (청년참여 확대)

- 청년층(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청년일자리 목표 : 지자체 선발 인원의 5% 이상(단 군(郡)지역은 3%이상)

\*\* 선발 우대 조치 :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 선발

\*\*\* 목표 달성 인센티브(연말 사업성과평가 가점 부여 및 차년도 예산배분 반영)

#### ○ (기초생활수급자 참여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일률적 사업배제 대신 생계급여 수급권자만 배제하고, 기타 수급권자(의료·주거·교육)는 참여

\* 기준중위소득 및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15.7월)

\*\* (종전) 최저생계비의 150% = (변경) 기준중위소득의 60% = 약 263만원(4인가구)

#### ○ (노인참여 제한)

- 사업참여 희망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로 안내를 하고, 그래도 사업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선발('16년 한시)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

( '16년 지자체별 선발 인원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5년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시군구는 **25%**까지 선발 가능)

\* '17년 사업부터는 선발 제한



□ 일자리 측면 : 생산성·지속성·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주민 공동작업장 육성 등

- (마을공방 등 공동작업장 육성 강화) 임금차별화·연속근무·사업기간연장·재료비 인상 등을 통해 기술습득·민간취업 기반 마련
  - \* 임금차별화 : 근로시간 연장 가능(주당 35시간 이내)
  - \*\* 연속근무 : 상·하반기 연속참여 가능(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기간연장 : 상·하반기 분절적 운영 → 연중 운영 가능
  - \*\*\*\* 재료비 인상 : 일자리 예산 중 재료비 비중 30% → 40% 이내로 상향
  
- (마을기업 전환 유도) 자립가능한 일자리 사업장에 대해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마을기업으로의 전환 유도
  - \* 직업안전교육 및 사업중 마을기업 관련 교육 실시(시·도 마을기업(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활용)
  - \*\* 관련 교육(컨설팅 등)시 인센티브(연말 사업성과평가 가점 부여 및 차년도 예산배분 반영)
  
- (기술 습득 및 민간취업 연계 강화) 취업교육·알선 강화 및 향토자원·기술 등 숙련·전문성 필요 사업에 대해 지속 참여토록 배려
  - \* 취업교육 인정시간 월 20시간 → 25시간
  - \*\* 지자체 자체 취업지원센터·일자리발굴단 보조인력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활용 가능
  - \*\*\* 기술 숙련 최대 2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 (사업유형 조정) 5대 유형 10개 사업 → 4대 유형 8개 사업으로 개편, 유형별 비율 조정 및 시책사업 내용 제한 등
  - \*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의 재편을 위해 4유형(마을가꾸기 등) 65% 이내로 제한(50% 이내를 목표로 향후 4년간 매년 5%씩 감축)하고, 1~2유형 20% 이상
  - \*\* 비율 미준수시 페널티(연말 사업성과평가 감점 부여 및 차년도 예산배분 반영)
  - \*\*\* 시책사업 제한 : ①국가시책 ②지자체 외부표시(게재) 시책 중 1,2유형에 준하는 사업

-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 □ 기타 사항

- 쪽방촌,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역 등 지역공동체 관련사업 발굴 강화
  - 지역공동체 유지·복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마을주민 공모형 일자리사업 추진
  - 노숙자 및 쪽방촌 거주자의 선발 기준 점수표 적용제외, 우선선발
  -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포함)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 일자리사업 상·하반기 사업 참여 가능, 자립능력 제고
-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최저임금 변경(5,580 → 6,030원)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등
  - 사업비 정산 방법 구체화(이월 및 국고 반납)
  - 공적연금 수령자 사업참여 배제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장애인(본인·가족)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 \* (종전) 신청자가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 (개선) 사업시행기관에서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장애인) 담당부서 조회·확인
  - 보험료 부과요율 변경(건강보험 3.04% → 3.06%)

**참고1**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유형** (4대 유형 8개 사업)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사례]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짚풀공예를 통한 지역전통기술 사업(세종 전동면)</li> <li>○ 그루터기 목공예(인제목기) 운영 사업(강원 인제군)</li> <li>○ 한지공예 기념품제작 및 판매사업(전북 전주시)</li> <li>○ 고하도 목화밭 조성 사업(전남 목포시)</li> <li>○ 산나물 체험단지 조성사업(경남 고성군)</li> </ul>
	② 시책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시책사업</li> <li>○ 쪽방촌 공동작업장(꽃피우다) 운영사업(서울 중구)</li> </ul> <p>* 시책사업 제한 : ①국가시책 ②지자체 영도업무보고 포함 등 외부 표시(개제) 시책 일자리사업 중 1,2유형(전통자원기술습득·민간취업)에 준하는 사업</p>
	③ 자원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치 및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서울 송파구)</li> <li>○ 쌀뜨물 EM발효액 생산보급 운영사업(부산 영도구)</li> <li>○ 정크디자인센터 운영사업(경기 안산시) - 폐가구 및 폐의류 리폼제작</li> <li>○ 조경부산물 퇴비화사업(경남 창원시)</li> </ul>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④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마음 나눔터 공동작업장 운영사업(부산 해운대구)</li> <li>○ 놀품공방 공동작업장 운영사업(대구 동구)</li> </ul>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li> <li>○ 일자리발굴단 운영(구인업체 정보제공 등)</li> </ul>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집수리사업</li> <li>*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제외</li> </ul>
	⑦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서울 도봉구)</li> <li>○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 사업(광주 광산구)</li> <li>○ 다문화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경기 가평군)</li> <li>○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제주 제주시)</li> </ul>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 공간·시설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수유단지 등 조성관리 생산사업(부산 남구)</li> <li>○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인천 남동구)</li> <li>○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사업(충남 아산시) - 벽화·POP·폼아트 등 기술 습득</li> <li>○ 주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울산 동구)</li> </ul>

\* (유형별 비율 제한)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의 재편을 위해

1) 4유형(마을가꾸기 등) 65% 이내로 제한(50% 이내를 목표로 향후 4년간 매년 5%p씩 감축)

2) 1유형+2유형 합계 20% 이상

**참고2**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분	'15년 지침	'16년 달라지는 사항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인원 : 1만명 - 1차(5천명), 2차(5천명)</li> <li>○ 사업비 : 479억원 - 국비 239억원, 지방비 239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인원 : 9,000명 - 1차(4,500명), 2차(4,500명)</li> <li>○ 사업비 : 443억원 - 국비 221억원, 지방비 221억원</li> </ul>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li> <li>○ 배제 : 기초생활수급자</li> <li>○ 제한 :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7~4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li> <li>○ 배제 : 생계급여 수급권자</li> <li>○ 제한 :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0% 이내 원칙, 최대 25%까지 가능)</li> <li>○ 확대 : 청년(18~34세) 우선 선발(5% 이상)</li> </ul>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8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30원</li> </ul>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미만 : 주 26시간 이내</li> <li>○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li> <li>○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 (노인 선발 단계적 폐지 20(25)% → 0)</li> </ul>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7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92만원</li> </ul>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이고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5대 유형 10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특화자원 개발형</li> <li>②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li> <li>③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li> <li>④ 지역생활공간 개선형</li> <li>⑤ 서민생활 지원형</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생산적·공동체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유형 8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자원 활용형</li> <li>② 지역기업 연계형</li> <li>③ 서민생활 지원형</li> <li>④ 지역공간 개선형</li> </ol> </li> </ul>
유형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유형 7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유형 65% 이내, 1~2유형 20% 이상 (4유형 최종 50% 이내를 목표로 매년 5%p씩 감축)</li> <li>○ 비율 준수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li> </ul>
공동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15% 가산 또는 6시간 추가 중 선택</li> <li>○ 상·하반기 운영</li> <li>○ 재료비 3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연장(1주 35시간 이내)</li> <li>○ 연중 운영가능</li> <li>○ 재료비 40% 이내</li> </ul>
마을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관련 교육 실시</li> <li>○ 교육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li> </ul>
기술습득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교육 월 20시간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교육 월 25시간 인정</li> <li>○ 취업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li> <li>○ 기술숙련 최장 2년</li> </ul>
사업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이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국가균형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이월 가능</li> <li>○ 당해연도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반납</li> </ul>

# 제1장 적용 범위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본 종합지침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종합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종합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제2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개요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①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6. 3월~10월(상·하반기 각각 4개월)  
\*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생계대책 강화를 위한 동절기(1~2월, 11~12월)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 선발 추진
- 참여 인원 : 9,000명(상반기 : 4,500명, 하반기 : 4,500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비 : 44,304백만원(국비 22,152백만원, 지방비 22,152백만원)
- 회 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②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③ 예산 배분계획

#### ①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금액	44,304	22,152	22,152
	비율	100	50	50

\* 각 자치단체별 실제 배분비율은 다를 수 있음

#### ② 자치단체 지원기준

- 국비·지방비 비율 : 각 50%(국비 22,152백만원)  
\* 지방비의 시·도비 및 시·군·구비 배정 비율은 재정사정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 결정

### ③ 위원회 운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④ 대상사업 : 4대 유형 8개 사업

- 단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생산적·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환경정비, 단기적 사업 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 사업현황 (①~⑧)

-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 (1-②) 시책사업 제한 : i) 국가시책사업

ii) 지자체 연두업무보고 포함 등 외부 표시(계재) 시책 일자리사업 중 1,2유형(전통자원·기술습득·민간취업)에 준하는 사업

\* (유형별 비율 제한)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 재편을 위해

- ① 4유형(마을가꾸기 등) 65% 이내로 제한(50% 이내를 목표로 향후 4년간 매년 5%p씩 감축)
- ② 1유형+2유형 합계 20% 이상

※ 재정지원사업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금을 전액 세입처리

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수익금을 차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 일자리사업 추진에 활용

## <1유형 사업>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지역특산물(농수산물, 관광자원, 토속음식 등) 상품화사업
- 체험먹거리 단지 조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 전통식품 가공 저장사업, 유실수 재배를 통한 마을 수익창출, 친환경쌀 누룽지 생산사업 등
- 국궁, 낙죽장도, 한지 등 전통기술 활용 공예품 제작 판매 (향토공예 제작 및 판매사업, 전통한지 제조·복원사업 등)

### ② 시책일자리 사업

- 생산성·지속성 조건\*의 제1·2유형에 준하는 시책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을 통해 생산품으로 수익 창출하거나 기능·기술 습득을 통한 민간 취업연계 가능사업 등

\*\* 시책사업 제한 : ①국가시책사업

②지자체 연두업무보고 포함 등 외부 표시(계재) 시책 일자리사업 중 1,2유형(전통자원·기술습득·민간취업)에 준하는 사업

- 청년일자리사업, 자전거길·녹색길 조성 등
- 쪽방촌 지원사업(도배·장판 교체, 화장실·취사장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쪽방촌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 쪽방촌 거주자 등 특수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 ③ 자원재생사업

- 친환경 쌀뜨물을 이용한 EM 녹색제품(발효액, 비누, 세제 등) 생산 보급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방치자전거 수거·수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중고가전·가구 등 수거·수리, 산림 부산물 활용사업, 폐현수막 수거·제작을 통한 자원 재활용

\* 단순 폐자원의 수거·분류 재활용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2유형 사업〉 지역기업 연계형

###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기업연계, 주민자율)

- 지역기업과 공동 또는 지역주민 자율로 공동작업장 운영
  - 자치단체(공동작업장 마련, 임금지급), 지역기업(일감제공 및 기술교육, 채용), 취약계층(사업 참여)과 연계한 지역단위 공동작업장 개설
    - \* 임금차별화 추진사업으로 각 시·도당 2개 이상 사업장 개설 운영
    - \* 자립 가능한 지속적인 일자리로 상, 하반기 연속 참여 가능
  -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MOU협약체결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주당 35시간까지 운영가능(월105만원 수준)

#### < 공동작업장 운영사례 및 절차 >

㉠ 공동작업장 운영 사례					
구분	작업장 명(면적)	근로자수	작업내용 (수익창출방법)	연계기업	비고
소기업 지원	희망 공동작업장(290㎡)	24	○ 의류 마무리 공정	세일통상	월임대료 500천원
공동작업장	한마음 나눔터(80㎡)	10	○ 차량부품조립 등	에코텍 외 3개 기업	월임대료 400천원
	희망나눔터(150㎡)	10	○ 농·수산물 가공 등	명산농산기장미역	월임대료 500천원
	송수 행복한일터(80㎡)	10	○ 농산물 가공 등 ○ 기초립 작업 등	응비제약 외 3개 기업	-

㉡ 운영절차 및 방법					
공동작업장 마련 (리모델링, 업체물색) 자치단체	⇨	MOU 협약체결 (일감제공, 재정지원) 자치단체·기업체	⇨	일감제공, 기술지도 기업체	
작업 (신발, 의류 등 마무리공정) 공동작업장	⇨	제품 납품, 수익창출 공동작업장	⇨	수익금 재투자 (일자리사업, 일터확장 등) 자치단체	

### ○ 공동작업장 사업발굴 · 확대하여 공동체유지복원

- \* 공동체 유지·복원이라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사업성격 및 예산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 \*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농번기에 사업을 중지하는 등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 「공동작업장운영사업」은 일자리사업의 생산성 등을 강화하고 참여자 유인을 도모하고자 임금 차별화 운영 사업으로 추진
  - 상·하반기(최대2년) 연속참여 가능(월 105만원 정도 지급)
    - \* 단, 동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자는 임금차별화 대상에서 제외(월 43만원 정도 지급) / \*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월 92만원 정도 지급
- 공동작업장 등 사업의 수입금 전액 세입처리

##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 (지원대상) 종업원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위주로 지원,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 \*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쪽방촌 참여 마을기업 지원(지원인원 1명, 지원금액 월 60만원, 지원기간 4개월 원칙, 계속고용시 2개월까지 추가 가능)
    - ☞ <붙임16>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 (대상기업) 지역경제단체의 추천 또는 일자리 DB에 있는 기업의 신청을 자치단체가 받아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해당 기업과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체결(임금지급, 기능기술교육, 채용 등)
  - (지원금액) 1인당 월 60만원 이내 지원(4대 보험, 간식비 등 포함) 하되, 근로시간은 해당기업과 협의하여 주 40시간 까지 가능
    - \* 4대 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 (지원기간) 4개월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2개월까지 1인당 총 360만원 범위내 지원 가능
  - (채용 등) 신청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공동면접 등이나 희망 대상자중에서 선발·알선을 통해 채용
- 일자리 발굴단 운영
  - 자치단체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자와 연결
  - 취업상담창구 개설, 구직 희망자에게 구인업체 정보 제공
    -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일자리·취업센터·일자리발굴단 등에 직업상담사 외 보조인력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활용 가능

## 〈3유형 사업〉 서민생활 지원형

### ⑥ 취약계층집수리 지원사업(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제외)

- (지원대상)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가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장기임대 또는 무상사용 주택은 5년 등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단, 3년이내 모든 집수리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자활근로 사업 중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 단순 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지원내용) 주택의 보일러 수리, 창호 수리, 화장실 수리, 싱크대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벽체 단열재 보강, 전기·가스·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등

- (가구당 소요예산) 150만원 이내

###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활편의,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및 출산도우미 사업,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 정보화사업 등

-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언어능력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자국문화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 다문화여성(보육·외국어)교사 활용, 외국인 통·번역서비스지원, 다문화 여성 모국문화 홍보사업 등



## 〈4유형 사업〉 지역공간 개선형

###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시설 활용사업

- 단순 환경정비에서 벗어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 당해 연도 또는 연차별, 타사업 연계 추진  
(예시 : 집수리사업, 공동작업장운영, 싹지공원 조성,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계 추진)
- 지역문화자원, 역사유적지 등을 활용한 문화체험장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 레일바이크 관광명품화 사업, 야생화단지 명품화 사업 등
- 걷기탐방로 개설, 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산책로 정비사업,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친환경 숲길 조성사업,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명품길 조성, 명품돌레길 조성사업 등
- 지역 유희공간(폐교·폐철도·마을회관 등) 활용(폐교 등 활용을 통한 주민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 마을 주변 유희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정비하여 만남의 장소·휴식공간·마을 문화공간 조성
- 평생학습관, 폐교를 활용한 농촌생태체험학교 체험장 조성사업 등
-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 보식, 테마공원조성,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 등



# 제3장 신청자 접수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①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 자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
- 노동강도 및 지역여건 등 단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각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선발('16년 한시)

-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17년 사업부터는 선발 제한)  
( '16년 지자체별 선발 인원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5년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시군구는 **25%까지 선발 가능**)
- \* 청년(18~34세) 참여 확대 : 지자체 선발인원의 5%이상(군(郡)지역은 3%이상), 선발우대조치(접수료 적용 제외, 우선선발)
- 중증장애인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 가능

### ②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자 접수기간

-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유형 및 단위사업(4대 유형, 8개 사업)별 모집 인원을 정하여 접수 및 선발
  - 단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 (예) 자원재생사업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 50명중 여성 20% 이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선 선발 등 참여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모집 가능
  - 하반기 접수방법 및 절차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상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접수 및 심사기간은 추후 통보)

\* 상반기 탈락자중 참여의사가 있는 자(전화 확인 등)는 신청서만 접수  
(구비서류 면제, 소득 및 재산조회는 실시, 단 소득 변동 등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소득 및 재산조회 등을 심사하여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추가 선발)

⇒ 단, 선발자 발표이후 탈락자 이의신청시 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건강  
보험료 납부액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및 재산 재심사 후 사업 참여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추가선발 또는 대기자 등재여부 결정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시·군·구별  
별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 ②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붙임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가능)

- 주민등록상 가족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 일괄 조회 및 확인

\* 신청서상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로 같음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는 신청인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붙임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장애인(본인 및 가족) 증빙 : 시스템(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장애인) 담당부서 조회·확인

○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③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① 주소지 신청

-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원칙
-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포함)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 지역 신청 허용
- 참여자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접수 거부사례 금지
  -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선발·심사과정을 거쳐 참여여부 결정

#### ② 접수처 및 처리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접수대장 관리
-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시·군·구 지정 접수처에 송부
  - 근무는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실시
  -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신청접수기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자치단체별 안내자료 참조

### ③ 중복 참여자 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예산 삭감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 하여도 전일제 사업에 해당하므로,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 ④ 신청서 접수절차

- 8개 사업 중 자치단체별로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후 단위사업 선정
- 열거된 단위사업 중 2개 사업까지 접수
  - 신청자는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 가능
- 지역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선정시 사업장별 최소 인원이 5명이상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배치 (중소도시 군단위 및 사업특성에 따라 5인이하 선발 가능)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모집방법으로 전환 추진



# 제4장 대상자의 선발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제 4 장 대상자의 선발

### ① 선발 주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

### ② 선발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예시)<sup>1)</sup> -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0% 범위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점 부여
    -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 휴·폐업자 : 모집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포함)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청년(18~34세)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구직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36호(2015. 7.29.)」

### ③ 사업시행기관의 조회·확인 내용 및 방법

#### ①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확인

#####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내용을 공문에 포함하여 요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붙임15>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및 결과 통보서

#### ②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지방세 자료로 조회)

#####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 ○ 최종 선발자 확정 후 이의신청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추가 선발가능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은 심사(審査) 전·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제기자, 자체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자치단체별로 해당금융기관 또는 본부에 조회 ⇒ 부적격 판정시 즉시 배제 조치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여부 : 사회복지담당 경우

④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 참여 여부

-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 또는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프로그램으로 확인

\* 공공근로사업 : 일모아시스템 또는 공공근로시스템 등 시·군·구 공공근로 DB로 확인

⑤ 장애인 여부

- 장애인(본인 및 가족) 증빙 :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장애인) 담당 부서 조회·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장애인 본인 확인 가능

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⑦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 필요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 ④ 선발 절차 및 방법

##### ①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같음)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5 및 '16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같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붙임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 반복·중복 참여 등 참여제한

.....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횟수 제한)** .....

-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5대강 환경지킴이, 공공근로
- ◆ 횟수제한 : 모집·선발시 상기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산정방법(예시)**

- `15.5.15일이 참여시작예정일인 경우 `14.5.15~`15.5.14(1차년도), `13.5.15~`14.5.14(2차년도), `12.5.15~`13.5.14(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기준연도 중 1일이상 참여한 경우 1회 참여로 산정
  - ① 1차년도(공공근로)→2차년도(지역공동체)→3차년도(미참여) ⇒ 참여제한
  - ② 1차년도(미참여)→2차년도(지역공동체)→3차년도(미참여) ⇒ 참여가능
  - ③ 1차년도(지역공동체)→2차년도(노인일자리)→3차년도(공공근로) ⇒ 참여제한
  - ④ 1차년도(지역공동체)→2차년도(노인일자리)→3차년도(문화관광해설사)⇒참여가능
- \* 예시 ④의 2차년도 또는 3차년도 사업은 180일 이하인 경우이며, 180일 초과인 경우에는 2년 반복참여 여부 추가 검토 필요

-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경우 재공고,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 조건으로 선발)
  - 하반기 선발시 재공고 이후에도 선발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상반기 선발자 재참여 가능
  -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업참여자
  - 기능·기술습득이 가능한 사업(향토전통기술의 청년전수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참여 제한** .....

-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5대강 환경지킴이, 공공근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6개월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상기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다른 조건으로 선발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경우, 대상사업 중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제외 (최초 참여자 우선 선발)
    - ⇒ (예) `16년에 선발하는 경우 직전 3년(`13~`15년)에서 반복참여 횟수 산정

##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 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동일 유형의 중앙부처 사업(직접 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간, 자치단체 고유사업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 제한내용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 < 참여기간 산정방법 >

-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실제 사업 참여일을 합산하되,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 \* 60세 이상~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 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아래 사업

	상당한 이유	해당 사업
1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 아동안전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 진흥지원, 사회공헌일자리, 월드프렌즈코리아,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2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부여를 위한 일자리	- 자활근로
3	격오지 등 거주자 대상 일자리	- 어업협정이행,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환경지킴이(주민감시원)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항공전문인력양성, 박물관 에듀케이터, 예술강사, 업종별 재해예방(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5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장애학생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청소년 동반자, 노인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 <붙임5> '16년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 제한

-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 직접 일자리 분류 기준 >

구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 제한내용 : 전일제 일자리 사업은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시간제 · 간헐적 일자리 사업은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중복참여 허용)

## ②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1세대에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

### (예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납부자(부양자)와 세대를 같이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의 가구 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적용사례 : 세대원 5명〉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48,830원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인정금액**  
⇒  $48,830\text{원} \div 0.0306 = 1,595,752\text{원}$
- ▶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소득 인정액인 3,122,309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

㉡ 세대를 달리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에게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나눈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추정금액**

〈적용사례〉

- 납부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참여신청자 가족 : 신청자(남편 홍길동), 처(이순남)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 부양자(남편 홍정운), 처(박순녀), 아들(홍만중)
- 건강보험에 등재된 인원수(5명) : 홍정운, 박순녀, 홍만중, 홍길동, 이순남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158,230원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인원수로 나눈 보험료 :  $158,230\text{원} / 5\text{명} = 31,646\text{원}$ 
  - 인원 수로 나눈 건강보험료(31,646원)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금액** ⇒  $31,646 \div 0.0306 = 1,034,183\text{원}$
- ▶ 신청자(홍길동)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는 2명이므로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1,659,962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함

- '16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0.6)×0.0306

(단위 : 원 /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0% 이하	소득인정액 (A×0.6)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보험료 (A×0.6×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 재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재산 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 소득 및 재산조회를  
 하고 점수표에 의하여 선발여부 결정
  - 차상위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등
  - 차상위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한부모가정 지원(150%이하로 자격조건 제한하는 자치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우선돌봄 차상위 : 저소득 노인, 저소득 아동,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가구 등으로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  
 지대에 있는 자중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세대주

- 세대주(가장)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원칙
- 여성세대주(가장) : 여성세대주(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를 원칙
- 단,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 남편이 있음에도 주민등록표상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 무능력을 입증하여야만 여성세대주 가점대상이 됨(형식적 여성세대주 가점 금지)
  - ☞ (예시) 근로 무능력 : 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요양·치료·재활 등 진단서(또는 진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에 의한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확인

○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로 확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경우만 인정
- \* 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은 자치단체의 장(또는 자치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가능
- \* 장애인(본인 및 가족) 증빙 :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장애인) 담당부서 조회·확인

### ③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2순위까지 미달되는 단위 사업은 「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17년 사업부터는 선발 제한) ('16년 지자체별 선발 인원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5년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시군구는 **25%까지 선발 가능**)
    - \* 노숙자 및 쪽방촌 거주자, 청년(18~34세) 우선 선발, 청년 선발비율 5% 이상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 부여
- 근로능력 미달자는 근로시간 단축
  - 사업신청서 접수일 전일 기준으로 만 65세(예, 접수시작일 '16.1.20.인 경우, 1951.1.19. 이전 출생자)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1일 3시간) 이내로 근로가 원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2차 참여자 선발시는 자치단체별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근로 불가능 판단기준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근태 불량자 사업 참여제한 근거규정 마련(p.82 관련)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④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는 사업시작일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통보일자를 조정 가능
  -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시 사업 참여여부를 확인 후 최종 확정(게시판 공고 등)

#### ⑤ 1차 추가 선발자 근무방법

- 1차 사업기간중 추가로 선발된 자가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자는 4개월 범위까지 2차 사업기간중 잔여일수 근무 가능

#### ⑥ 선발의 효력

-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단위사업 종료시점까지 효력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자치단체)가 참여자의 의사를 수렴한 후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 가능
  - 단위사업(8개사업) 참여중에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능 하며, 건강 등 불가피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자치단체의 장(또는 추진위원회)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이 가능함
  - 단위사업 종료 시 및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시에는 예외
- 단위사업 참여자가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즉시 재배치 가능하나,
  -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중도포기하고,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는 불가

## ⑦ 선발자 관리

- 선발자가 확정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선발자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 현황 및 사업장 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수정·보완
  -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 수 사업 근무지 조정

- 선발계획 인원에 비하여 선발된 인원이 미달될 경우
  - 타 단위사업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을 통해 충원 가능
  - 타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 탈락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수요가 있는 당해 기관의 사업에 투입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장 이동시 임금지급 등은 기관(시·도, 시·군·구)간 협의 결정
- 예비 대상자를 사업장 배치시 대기 순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희망사업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

##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앞면)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b>총점 155점</b>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0)	•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5 (15,0)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 ~ 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 ~ 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b>감점사유 △50점</b>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10	•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뒷면)

-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 제5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등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1 국비예산의 배정

- 사업예산은 일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는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
    - 단, 지방비를 본예산에 미반영시 국비를 우선 집행, 지방비는 반드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 시·도별 예산배정은 인구수(10%), 차상위계층 수(20%), 재정자립도(20%), 예산집행율(20%), 사업추진 성과(30%)를 반영하여 결정
  - 시·도의 시·군·구 예산배정은 재정자립도, 사업예산 집행율, 사업추진 성과 등 시도별 예산배정기준을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자율 결정
  -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30%이내 원칙
    - \* 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40%까지 사용 가능
    - \* 폐기물 수거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시 40%까지 사용가능
- ☞ <붙임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 ② 예산의 집행

### ① 인건비 : 시·도별 총사업비의 70%이상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48,240원(시간당 6,03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 1일 임금 48,240원 = 6,030원 × 8시간(1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됨)
- 4대 보험료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주 부담금
- 간식비 등
  -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은 1일(근로시간 1시간 이상)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에게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수당지급 가능(근로일에 한해 지급)
  - 참여자 출석 및 건강점검(발열 등), 사업담당 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로 작업장 관리 및 사업 추진 등
- 전문기술인력 고용
  -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컨설팅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술검증을 통해 민원발생 방지
    - \* 전문기술인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가능
  -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단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범위내에서 책정하여 인건비로 지급, 기타 근로조건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

## ② 재료비 및 부대비 : 시·도별 총사업비의 30%이내

- 재료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임차료,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비
  - 예산 편성지침상 재료비 과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재료비 및 부대비의 사용 한도
  - 자치단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 및 부대비는 30% 이내 원칙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재료비로 집행 가능
- 장비 등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 현지 교통비
  - 사업의 성격상 현장활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실비(여비) 지급가능
  -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시 포함 안됨)

## ③ 관리비 및 운영비 : 시·도별 총사업비의 4%이내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 됨

### ③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가능
- 다만, 보조금 정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①동일 부처 ②지특 내 동일계정 내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제3항의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동일 부문 사업을 의미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집행잔액 미활용시 다음 연도 지방재정 수입으로 편입해서는 안되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이자발생액 포함)



# 제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①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 ② 임금

### ① 임금단가의 결정

-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48,240원(시급 6,030원×8시간 = 48,240원)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 예산 집행방법 및 항목은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음

#### 〈예 시〉

◆ 관리요원(작업반장)의 경우 ☞ 주 30시간 = 1일 7.5시간 × 4일  
 - 총임금 = (45,225원<sup>(1)</sup>×16일) + (36,180원<sup>(2)</sup>×4일) + (3,000원<sup>(3)</sup>×16일)  
 + (5,000원<sup>(4)</sup>×16일) = 996,320원

(1) 1일 임금 ☞ 45,225원 = 6,030원×7.5시간(주 4일, 16일 근로)

(2) 주차 수당 ☞ 36,180원 = (6,030원×7.5시간×4일) ÷ 5일

(3) 간식비

(4) 작업반장 수당

- 보험료 개인부담분 = (996,320원-48,000원)×8.411% = 79,763

\* 간식비(48,000원) 비과세

- 실수령액 = 996,320원 - 79,763원 = 916,557원

- ◆ 단, 임금차별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까지 인건비 지급가능

## ② 임금의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격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 상반기(1~6월) 재정 조기집행(전체사업비의 60%)시 매월 말까지 인건비 지급 및 국비 우선 지출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 등은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입금 가능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빙

### ☞ <붙임17> 지역공동체일자리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압류 금지되는 “전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 시행되지 못함
- \* 근거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694호('10.6.7.) 및 행안부 지역경제과-4093호('10.6.9.)  
“정부일자리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압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협약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로부터의 입금만 허용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출금·이체는 자유롭게 가능

### ③ 근로 조건

####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이내이면서 주 3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22:00이후 야간근무 금지)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 35시간 까지 운영가능
  
- 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 1일 3시간 이내 또는 주 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 주 2일(월, 화) 근무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우천, 전염병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수·목요일 대체근무 가능  
(대체근무 지정은 그 주내만 가능)
    - \* 대체 근무일은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만 근무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전문인력 및 근로능력 미달자 등 필요한 경우 part-time 고용 가능(part-time 참여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지급)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평일 임금 적용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 ②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 유급 주휴일은 사업개시일부터 1주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단위로 계산
  - \* 3월1일(국경일)에 근무하지 않으나 사업기간을 3.1 ~ 6.30까지 공고 후 2월25일에 선발확정한 점을 감안 3월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3월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연차휴가 지급
  -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 만1월로 계산(2.15~3.14)하여 연차휴가 지급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 수당은 지급
- 사업 시행을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는 유급 주휴일 수당은 미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계산방법〉

#### <65세 미만>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0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36,180원 = (6,030×7.5시간×4일)÷5일

\* 1일 7.5시간 근로일수(4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또는)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0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36,180원 = {(6,030원×8시간×3일) + (6,030원×6시간×1일)}÷5일

\* 1일 8시간 근로일수(3일) + 1일 6시간 근로일수(1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15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8,090원 = (6,030원×3시간×5일) ÷ 5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65세 미만>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36,180원(1일 평균 임금 지급)
  - \* 산출근거 : 6,030원×6시간(1일 통상근로시간)×1일
  - \* 주당(7.5시간×4일) 또는 (8시간×3일 + 6시간×1일) 근로 시 통상 하루당 근로시간은 6시간임

<65세 이상>

- 통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8,090원(1일 평균임금 지급)
  - \* 산출근거 : 6,030원×3시간×1일

- 사업 참여자 중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음
  - ※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사업자·근로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주일간 근무일이 1일도 없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지급  
예) 계속되는 장마, 신종플루 감염, 구제역으로 사업장 폐쇄 등
-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
    -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주휴일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사업 참여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병가의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시작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근로로 간주
  - 오전중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반일근무, 14:00이후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전일 근무한 것으로 봄
  - \* 1일 근로시간(09:00 시작)이 8시간인 경우는 오전은 4시간, 오후는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 부터 만 1주를 말함  
(화요일 ~ 다음주 월요일)
    -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3.1 ~ 3.31, 5.22 ~ 6.21)
    - \* 3월1일(국경일)에 근무하지 않으나 사업기간을 3.1~6.30까지 공고 후 2월25일에 선발확정한 점을 감안 3월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3월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연차휴가 지급
- 근로계약을 2차로 나누어 할 경우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방법
  - 농번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기간에는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 1차 계약기간의 근로한 잔여기간을 2차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계산(예시) >**

구분	기간		
	1차 계약	작업 중단	2차 계약
근무계약기간	'16.3.1~5.22	5.23~6.6	6.7~7.15
연차 유급휴가 계산	3.1~3.31→1월 4.1~4.30→1월 5.1~5.22→22일	연차 유급휴가 미계산	5.1~5.22(22일)+6.7~6.15(9일)→1월 6.15~7.15(31일)→1월



### ③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上記)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 경조사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을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사정상 사전 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실시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 < 경조사의 범위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출산	• 본인 및 배우자	5일
입양	• 본인	20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④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6,030원) × 실 근로시간
  - \*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도 실 근로시간에 한해 수당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 1일 근무시간(09:00시작)이 8시간인 경우에 4시간 미만은 4시간 임금을, 4시간 이상은 1일 임금 전액(48,240원) 지급
  - 간식비(3,000원) 및 작업반장 수당(5,000원)은 전액 지급
  - \* 단, 우천 등으로 출근 금지를 사전에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는 불허
  -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대체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임금은 평일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 ⑤ 근로 계약서의 명시

###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간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및 시간급,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재산과다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작업 중단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근로계약을 2번 이상 나누어 계약체결

(예시) 2016.5.23. ~ 2016.6.6.까지(2주) 작업중단이 필요한 경우

• 1차계약 : 2016.3.1. ~ 2016.5.22.

• 2차계약 : 2016.6.7. ~ 2016.6.30.

\* 사업중단 기간만큼 휴업수당 발생 방지

## < 근로 계약서 : 예시 >

1. ○○시(군, 구)에서 실시하는 2016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내용 : 사업유형 및 8개 사업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예,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
- 근로기간 : 사업 참여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단체의 근무여건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각각 계약할 수 있음
- 임금 등 급여조건
  - 1시간 단가 6,030원(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임금은 현금(계좌입금) 지급
  - 임금 지급방법 명기
    - 격주급, 월급(다음달 5일 이내. 단,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으로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약 종료 시 지급) \* 1개월 : 3.1.~3.31.까지
  - 1일 간식비 등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목요일(1일 7.5시간), 휴게시간(1시간 → 12:00~13:00)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근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 이내 또는 근무요일을 지정하여 주 2일 근무)
    - 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미달자 등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중복 참여자 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 3. 기타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농번기 중에는 작업을 중단(30일 이내)
  - 작물의 유형에 따라 파종기와 수확기가 상이하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별로 농번기를 피하여 사업기간을 결정
- 참여자 심사 후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이 2억원 초과 등 사업참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 . .

○○시·도 또는 시·군·구(장) 인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

홍길동 (주민번호)

(인, 서명)

# 제7장 사업의 시행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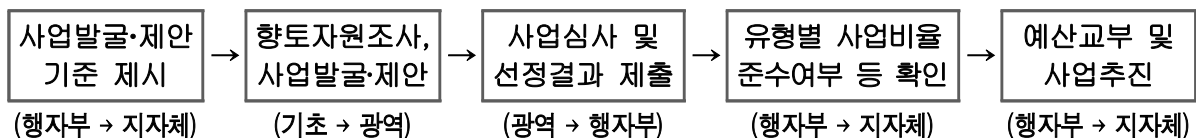
### ① 사업발굴 및 추진방향

-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개편을 통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상품화·사업화 등)하여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해 나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지속성)
- ‘지역사회의 유휴공간·문화유적지·지역명소 등을 활용한 생산성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생산성)
  - ※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타법령 저촉여부 확인 후 사업추진

### ②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 시·군·구에서 사업발굴 후 시도에 제안,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추진사업 선정, 행자부 유형별 사업비율 준수여부 등 확인

#### < 사업 심사·선정 방법 >



- 기초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광역단체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 참여인원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생산적·안정적인 사업여부, 타사업과 중복지원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 확행
  - 단위사업 선정시 사업장별 최소 5명 이상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배치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모집방법으로 전환 추진
  - 단위사업장별 1일 참여인원은 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특성(중소도시 군단위) 및 사업특성(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에 따라 5인 이하 참여인원 조정 가능

- 유형별 비율 : 4유형 65%이내, 1~2유형 20% 이상
  - \* 50% 이내를 목표로 매년 5%p씩 4유형 목표비율 감축
- 유형별 사업비율 준수 여부, 마을기업 관련 교육 여부 등을 사업추진성과 및 차년도 시·도별 예산배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결과 환류
- 사업추진상 관리 감독의 철저
  - (정기점검) 시·군·구 담당자는 월1회 이상 사업장 현장방문·점검을 실시(매월 사업장수의 20%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시·도 담당자는 행자부 통보)
  - (수시점검) 행정자치부 및 시도·시군구의 장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현장 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 실시

### ③ 농·어촌 일손돕기

- 농번기 중에는 일자리사업을 중단(30일 이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분야(하우스, 과수원 등) 지원
  -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 작물의 유형에 따라 파종기와 수확기가 상이하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별로 농번기를 피하여 사업기간 결정

### ④ 사업장 관리카드 등 비치

-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카드 등을 비치·관리
  - ☞ <붙임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 ☞ <붙임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교육 일지



# 제8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①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 ①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
- 사업시행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등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 지방세 과세자료, 금융재산 및 전세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기준 초과 사실 여부 확인 등
  - 『직접 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 사업계획 공고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중복참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계획 공고 시, 중복참여 제한 명시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선정
      -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 참여자별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참여자 배제
    -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해당기관에 통보(매월)
  -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함

### 📁 취업지원프로그램

- 범위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 ② 직업훈련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허용

\* 참여자 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

○ 사업참여자 중 직업훈련 참여수당 수급자에게는 사업 참여기간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고용노동부 등 통보)

## ③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붙임8>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무확인서”를 발급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 <붙임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 ④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 사업참여 일시중지 신청을 하고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내 참여 가능
  - \* 사업참여 일시중지 기간은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⑤ 사업참여자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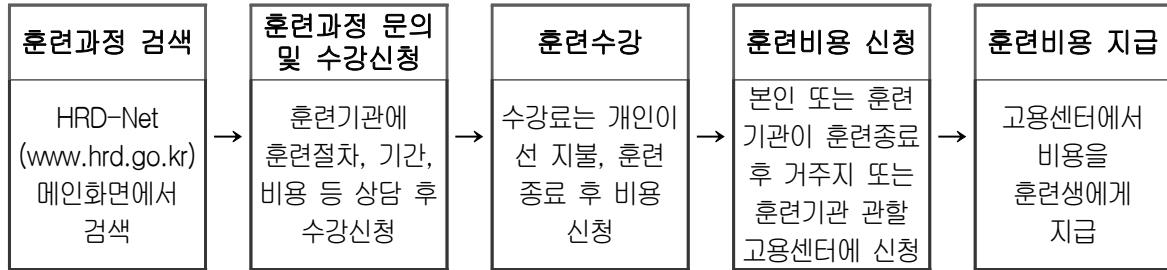
- 사업시작 전 관계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 예) 자전거 수리교육 등

#### ⑥ 안정적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지역자원 활용형\* 사업장 중심으로 전문인력 투입\*\* 등을 통해 사업참여 중 근로자의 기능·기술 습득을 적극지원
- 사업장 관리카드를 통해 기능·기술습득 추진상황 모니터링
  - \* 지역특화자원상품화, 지역전통기술복원, 참여자 기능·기술활용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
  - \*\* (예시) 한지공예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전북 전주) : 한지공예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가 2인이 투입되어 한지공예의 기초기술 전수
-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직업훈련 참여 적극 유도.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상담을 통해 적합 분야를 안내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고용부의 재직자 대상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역량 강화지원
  - \* 자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과정)을 수강한 경우 1년간 100만원 한도(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 \* 기계/장비, 정보통신, 의료, 건설, 사무관리, 공예분야 등 3,156개 과정 개설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참여자 대상으로(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 적극 홍보 및 참여 독려

**< 참여절차 >**



-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월 25시간 이내),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65세 이상자도 동일기준 적용

- 지역별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종료 시점에 맞추어 참여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소개(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 제도

- 시군구 또는 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시군구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인력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전국 고용센터에 협조공문 발송,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80('13.5.23)호)

○ (취업알선) 사업종료 이전에 맞춰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토록 조치(3회 이상)

\* 많은 참여자들이 정부 일자리사업에만 의존하려 하고, 취업알선·직업 훈련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참여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일자리·취업센터·일자리발굴단 등에 직업상담사 외 보조인력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활용 가능

- 탈락자, 중도포기자, 사업종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관련 정보 등 적극 안내·제공
  - 계약기간 종료자 및 취업 외의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안내, 공공취업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취업지원센터 등)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 ⑦ 사업종료 시 고용서비스 안내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 사업
-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 < 실업급여 > ☞ 문의 : 고용부 「고용센터-취업지원과」

- (개 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지급기간 및 지급액)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②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자치단체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함(고용보험법 제10조)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③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

-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신고기한 준수 등 관리 철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6030, '14.9.22시행)

□ 신고내용 및 기한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고용보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상용근로자 : 근로자 채용 또는 퇴직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이직확인서 제출(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나 일용근로자는 제외



○ 보험료 산출근거('16년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계		10.961%	8.411%	19.371%
국민연금		• 월보수액의 4.5%	• 월보수액의 4.5%	9%
건강보험		• 월보수액의 3.06%	• 월보수액의 3.06%	6.12%
장기 요양보험		• 가입자부담 50% (건보의 6.55%)	• 가입자부담 50% (건보의 6.55%)	건보의 6.55%
고용 보험	고용·정직·능력	• 월 보수액의 0.85%		0.85%
	실업급여	• 월 보수액의 0.65%	• 월 보수액의 0.65%	1.3%
산재보험		• 월 보수총액의 0.7%~34%* * 사업장별 기준에 따름		0.7%~34%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별 근무기간(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을 기준으로 하여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
  - 제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 소 득 세 : 비과세금액(간식비)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주 민 세 : 소득세의 10%(원단위 절사)
-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붙임1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제9장 사업의 지도·감독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1 사업장 관리

#### ①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 ② 사업장 지도·감독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1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 단, 작업반장은 지역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 작업반장이 없는 사업장은 선임근로자를 지정하여 출석체크
      - ⇒ 일자리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석체크 여부를 수시 확인 할 것
  - ☞ <붙임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지자체별로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업장 관리
- 현장점검 : 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은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 ③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지도 감독 규정** :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 감독 규정을 각 사업 시행 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배제)
  -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해당근로자,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관리규정 기재
- (불이익 금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를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 사업 참여자에게 조끼 및 모자(실외), 명찰 패용(실내)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 ②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①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사업담당자 : 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 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 사업참여자 : 시군구별로 사업시작 전(8시간 이상), 월 1회(2시간 이상) 이상,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교육실시

### ②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칭함)과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
-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구 성 :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책임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관계관 등
- 운영기간 : '16. 1월 ~ 12월
- 운영방법 : 원칙적으로 월1회 협의회 개최, 중대사고(사망 등) 발생시 수시
- 주요임무 :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협의 등

### ③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 안전책임자의 임무(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무부여 시에는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보고)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 ☞ <붙임12>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
  - ☞ <붙임13> 안전사고 관리대장

### ④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

#### ○ 안전보건교육 : 주관(자치단체) / 강사지원(안전보건공단)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참여자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생 집합과 교육장 및 기자재를 준비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지원(요청시)
  - \*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 수립시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강사지원 요청(무료)
- 파워포인트·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사례 위주 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안전보건점검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장기간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15~20분 간격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또는 염분 섭취) 등

▶ **폭염 시 단계별 조치사항**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 작업중단 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 임금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미만 근로 시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이상 근로 시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 태풍 : 산사태 및 절개지, 계곡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 겨울철 : 추락, 넘어짐(전도), 충돌, 붕괴, 화재, 질식·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 단계별 안전관리 · 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1단계	작업 시작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상태</li> <li>○ 장비, 설비의 이상 유무</li> <li>○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li> <li>○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li> <li>○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li> <li>○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li> </ul>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2단계	작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li> <li>-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li> </ul> </li> <li>○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li> <li>○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li> </ul>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3단계	작업 완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내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li> </ul> </li> <li>○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li> <li>○ 공동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li> </ul>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 (예시) >

보호구종류	용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감전위험 방지	· 지붕 개·보수 작업 등 2m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 물건낙하, 찢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 비산물·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보호	· 예초기 작업 등 물체의 튼 우려 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안전장갑	·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 흡수 방지	· 베임, 찢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 작업
방진마스크	· 미스트, 흙 흡입방지	·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 슬레이트 지붕철거(특급사용)
귀마개, 귀덮개	·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 90dB이상 발생하는 작업
방독마스크	· 흡입 방지	·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 질식재해 예방·석면 흡입 방지	· 맨홀, 지하정 등 밀폐장소 및 밀폐공간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보호복, 덧신	· 석면분진 노출방지	·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 ③ 사업장 재해예방 홍보 강화

#### ○ 캠페인 전개

- 주 관 :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공동
- 기 간 : 1월 ~ 12월말(월 1회 캠페인 실시)
- 참여대상 :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보건협회 등
- 장 소 :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 ○ 홍보물 제작·배부

- 주 관 : 안전보건공단 본부(지역본부/지도원)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사고사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주지해야 할 사항
  - 전도, 절단 베임 찔림, 충돌, 추락재해 위험요인 중점 관리
- 홍보 방법
  - 안전관리협의회 개최시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홍보물 전달
  - 점검 또는 근로자 교육시 근로자 개인별 홍보물 배부
  - 사업장 인근에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자료 등 배포

### ④ 근로자 보건 관리

① 건강검진 :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미실시할 경우 사업참여 배제)

②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주관(자치단체),  
확인(사업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배치
- 혹서기 작업을 피하고 다수 인력작업 장소에는 심폐소생술 실시 가능자 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 통보서 제출
- 단, 2015 및 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장 배치 조정 및 참여자 관리

③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주관(자치단체),  
보고 및 후송(사업 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④ 우천시 안전관리 대책

- 작업중 비가 3분 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

⑤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비 조치

- 참여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교육 실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시 주의사항 등
  -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등을 참고

-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확행

## 수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 ①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 ② 예방대책

- 사전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
-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참여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
    - \* 일모아시스템 ID,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 금지

## 숙 산재보험처리 절차

### ① 산재보험 가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산재보험에 가입
  - 산재보험 적용업종은 산재보험 요율표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업종으로 가입이 어려우므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해발생통계 산출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장명에 반드시 “지역공동체”를 표기하여 가입
      - \* 예)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
    - 자치단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되 작업(공사)현장 단위로 가입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작업중단 후 추진 시, 세부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작업현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재가입
      - \* 산재관리번호는 동일하되 개시번호는 공사현장 단위로 부여됨

**【'16년 중앙-지방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합동지침 : 고용부】**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
- 농촌 일손돕기 참여로 공공근로 세부사업의 종류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이 경우 미신고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징수금 등의 징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 종류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 조치

**② 재해발생시 처리**

○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서식

○ 휴업급여 신청 등 요양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사업담당 부서장)

☞ <붙임14> 단위사업별 산재보험요율

## 7 산업 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① 사망했을 경우

####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처리절차 :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수급권자 결정 →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 유족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반액 일시금(유족연금 50% 감액지급)으로 지급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분

####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 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 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 < 유족보상연금 산정 사례 >

\* 평균임금 : 50,000원(유족 4인 : 처, 자녀3) \*

#### ○ 기본금액 산정

- 평균임금×365일×47/100% = 50,000원×365일×47/100% = 8,577,500원

#### ○ 가산금액 산정

- 평균임금×365일×5/100%×4인 = 50,000원×365일×5/100%×4인 = 3,650,000원

####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가산금액 = 8,577,500원+3,650,000 = 12,227,500원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

## ○ 장의비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 최고금액 : 14,217,340원('16.1.1 ~ '16.12.31 적용)

\* 최저금액 : 10,061,800원('16.1.1 ~ '16.12.31 적용)

- 다만, 장제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지급절차 : 장의비 청구 →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 장의비 지급

## ② 부상을 당했을 경우

### ○ 요양비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비(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를 지급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
- 다만,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

###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0.7×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일수

### ○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
- \* 장해급여 =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 제10장 기타 행정사항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① 신청접수 준비

#### ① 안내책자 및 신청서 준비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를 일정장소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같음)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 「직접일자리」 유형 사업은 참여자의 선발, 관리 및 일자리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필수(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관주기, 제공기관 및 제공목적, 관련 전산망(구체적인 전산망 명칭 명시)과의 연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센터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 특히, 자체전산망을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를 자체전산망에서 관리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법령
    -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안내책자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임금 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접수처에 비치
  - 단,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자에게는
    - ㉠ 대상기업 기본현황(회사명, 소재지, 업종 및 연락처)
    - ㉡ 모집 분야 및 인원
    - ㉢ 자격요건(자격증 여부, 연령 등)
    - ㉣ 근무조건(근무시간, 급여, 상여금 및 학자금 지급여부 등)
    - ㉤ 기타 해당 기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 반드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고문(안) 및 근로조건에 명시
  - 재산, 소득, 중복참여 등 부적격자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방지

## ② 직원교육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총괄담당자는 신청접수 직원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자 안내 철저 및 불편 최소화
  - 읍·면·동 별로 접수대 설치 및 접수 인원 배치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

## ② 사업참여자 DB의 적극 활용

- 사업시작일 이전에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확인 등을 위해 일모아시스템 통합 DB 정비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시스템 이용 방법 등 사전 숙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이중 수급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별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정보 공유체제 확립

### ③ 사업계획 수립

#### ① 사업계획의 사전준비 철저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별 투입예산, 인력규모, 사업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 철저
- 가구소득, 재산, 생계급여수급권자 등 확인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 ② 사업 추진

-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목적별 특성에 따라 사업 시작일 조정 가능
  - 사업장 준비가 완료 또는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사업별 시작일을 따로 결정 가능

### ④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의 규정에 따라
  -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전체 사업참여 인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

### 수 사업추진실적 제출(개시 및 종료시 통계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 개시 및 종료시 사업추진실적을 다음달 7일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속 기 타

- 사업공고 및 참여자모집 시 「일모아시스템」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
- 상반기 실 집행 금액이 60%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상반기 전액 집행금지)



# 제11장 사업추진 일정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제 11 장 사업추진 일정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사전 통보 : '15.10.15.
-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요청 : '15.12.11.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의견 수렴  
- 의견수렴 : '15.12.11.~'15.12.17.
- 종합지침(안) 확정을 위한 시·도 담당관 회의 : '15.12.23.
- 종합지침 확정 및 시도 통보 : '16.1.5.(화)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월중 추진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 및 참여자 모집·선발 추진(예,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등)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16.1.15.(금)
-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16.1.18.(월)~1.25.(월)(8일간)
- 사업 참여자 심사(시도, 시군구) : '16.1.26.(화)~2.22.(월)(28일간)
- 사업 참여자 확정 : '16.2.23.(화)
- 사업 추진(지자체별 상하반기 각 4개월간 자율결정) : '16. 3~10월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16.5.16.(월)~5.23.(월)(8일간)
- 사업 참여자 심사(시도, 시군구) : '16.5.24.(화)~6.17.(금)(26일간)
- 사업 참여자 확정 : '16.6.22.(수)
- 사업 현장 수시 점검 : '16.3월~10월
- 분석 및 평가 : '16.12월~'17.2월
- 정산 : '16.12월~'17.2월



# 본 임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예시) - 시.도 및 시.군.구 공고 제 ○○호 -

##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3월~6월(상반기), 7월~10월(하반기)

\* 자치단체별 사업 준비상황 등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1월부터 조기에 사업추진 가능(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등 동절기 실시 가능한 사업위주로 준비된 시군구의 경우 1~2월 조기시행 가능)

○ 모집기간 : 2016.1.18.(월) ~ 1.25.(월) (8일간)

○ 모집인원 : ○○유형 ○○분야 ○○○명(예)

유형	모집분야	인원	비고(예시)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사업	12	60세 미만,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② 시책일자리 사업	10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③ 자원재생 사업	12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지역기업 연계형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12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25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서민생활 지원형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12	신체건강한자 우선 선발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2	다문화가족 및 외국어 능력자 우선선발
지역공간 개선형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시설 활용사업	25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자치단체에서는 모집분야별로 모집 추진

※ 모집분야별로 연령별, 성별,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단위사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 확보

##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②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킴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 ③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⑧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⑨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6,0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000군 000과 읍면동 ☎ (000)000-000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6. 1. .

○○ 시장·군수·구청장





( 뒷 면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b>(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 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b>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 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 기재사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 기타 담당자 의견	<b>담당자 확인</b> 성명                    (인)	

2016 .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부터 사업종료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6. . .	본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시장(군수) 귀하

2016년 월 일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도별	예산(천원)			비고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44,304,000	22,152,000	22,152,000	
서울특별시	6,096,000	3,048,000	3,048,000	
부산광역시	4,270,000	2,135,000	2,135,000	
대구광역시	1,584,000	792,000	792,000	
인천광역시	2,418,000	1,209,000	1,209,000	
광주광역시	1,552,000	776,000	776,000	
대전광역시	802,000	401,000	401,000	
울산광역시	1,076,000	538,000	538,000	
세종특별자치시	130,000	65,000	65,000	세종계정
경기도	6,616,000	3,308,000	3,308,000	
강원도	3,548,000	1,774,000	1,774,000	
충청북도	1,740,000	870,000	870,000	
충청남도	1,980,000	990,000	990,000	
전라북도	2,218,000	1,109,000	1,109,000	
전라남도	3,018,000	1,509,000	1,509,000	
경상북도	4,152,000	2,076,000	2,076,000	
경상남도	2,752,000	1,376,000	1,376,000	
제주특별자치도	352,000	176,000	176,000	제주계정

\* 인천 서해5도 사업비 3억원 포함

1. 직접 일자리(세부사업 기준 65) \* 광특사업은 별도로 산정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4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지원(건설현장안전지킴이)
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6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7	교육부	배움터 지킴이	
8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9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아 교육지원
10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11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12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구제역 예찰 전담요원
13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14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15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16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글로벌농업인재양성
17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8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19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사립박물관문화에듀케이터지원
21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2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3	문화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교육및배치
24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현장활동 및 신규양성
25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6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27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28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9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0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보훈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31	보훈처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32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33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34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35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36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37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38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39	복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지원
40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1	기재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42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4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보조포함)
44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45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46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47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48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49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50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운영등
51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52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53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54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다자협력전문가
55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해외봉사단
56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ODA청년인턴

57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58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59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60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61	행자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프로그램관리자육성
62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3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64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5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원 5대강환경지킴이

## 2. 직업능력개발훈련(54)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2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4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5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6	고용부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음자)	
7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8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9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10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11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2	고용부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13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4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15	고용부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6	고용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17	고용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18	고용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자자체 지원사업

19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지원
20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1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22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3	국토부	U-City 인력양성	석박사과정 취업자과정 지원
24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5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26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27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28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29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30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업계맞춤형교육프로그램
31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1.관광전문인력육성및산학협력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아카데미 4.관광통역안내사교육 5.카지노아카데미 6.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7.관광학계협력사업등
32	문화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콘텐츠핵심인력양성 사이버인력양성 창의인재동반성장 양성과 통합
33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특화교육
34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35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36	미래부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37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38	미래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39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40	법무부	직업훈련	
41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42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43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44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45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4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직업훈련
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48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4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
50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51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52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53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화학물질관리)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54	산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 3. 고용서비스(30)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3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5	고용부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6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7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8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9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0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1	고용부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2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제외한 금액
13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4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15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6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7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18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19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20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21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22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전역군인취업역량강화
23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전직교육원
24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25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26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27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8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29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30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4. 고용장려금(21)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2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3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4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	
5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6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8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9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연장지원금
10	고용부	장년고용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 인턴지원금
11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12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3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보)	

14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5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6	고용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7	미래부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18	산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기술혁신운영중견,중소기업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19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20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가젤형기업지원)	
2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 5. 창업지원(17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2	고용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3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체류형창업지원센터
4	미래부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 선도모델육성(신규)
5	산자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6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 활성화
7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8	중기청	장애인기업 육성	장애인창업교육
9	중기청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재창업자금(채무조정형포함)
10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1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12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13	중기청	창업기업자금(융자)	
14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15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16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17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11)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	고용부	구직급여	
3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4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5	고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8	고용부	채당금지급	
9	고용부	채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10	농림부	경영이양직불	
11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붙임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주관부서 :            시·군·구            과)

사 업 유 형		사업담당공무원 (안전관리담당자)	(전화        )
사 업 명		사업장 감독공무원	(전화        )
		사업장 안전책임자	(전화        )
		사업장 작업반장	(전화        )
사 업 목 적	○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 량 : ○ 사업 비 :        천원 (인건비 :        / 재료비:        )		
사 업 장 위 치		투입인원	1일 :        명    취약    명/전문    명
			연인원:        명    취약    명/전문    명
월        별 추 진 계 획	○ ( )월 : ○ ( )월 : ○ ( )월 : ○ ( )월 :		
사 업 성 과 (기대효과)	○ ○ ○		
특 이 사 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		
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현황			
비        고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추진 상황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
		○

현 장 사 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시작되면 즉시 사진을 첨부, 작성하여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2016. . . (요일) , 날씨

**1. 사업개요**

- 소재지 :
- 사업명 : ( )
- 근로계획인원 : 명( 남, 여)(취약 /전문 )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 남, 여)(취약 /전문 )**

※ 예시) 불참자 : 3명(결근 : 홍길동, 이순신, 조퇴 : 아사달)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 5. 안전관리 · 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b>1] 안전보건교육</b>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참여(   명)/ 이수(   명) 신규(   명)/ 이수(   명)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b>2] 개인보호구 지급.착용</b>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 여부 ○ 복장·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복장·보호구 착용실태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림방지를 위해 복장, 두발 상태 확인 및 면장갑 착용금지	<input type="checkbox"/> 지급보호구 :   종   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b>3]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b> ○ 장비의 관리상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이동시 장비의 안전한 휴대 여부 ○ 장비 및 설비의 사용요령교육 실시여부 ○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사용 실태	<input type="checkbox"/> 장비 :   종   개 <input type="checkbox"/> 부착 <input type="checkbox"/> 미부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b>4] 작업장관리 상태</b>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도로 주변작업시 차량유도자 배치 여부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조치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input type="checkbox"/> 배치 <input type="checkbox"/> 미배치 <input type="checkbox"/> 조치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b>수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b> ○ 현장에 구급함 비치 여부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치 <input type="checkbox"/> 미비치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6. 특이사항

-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16. . .

작성자 :                   (인)



일련번호 : 제 2016 - 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 명부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항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붙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016 - 호

근 무 확 인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재 직 상 황	④ 직 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위 사업장)		
	⑤ 재직기간	~	( 월 일)	
⑥ 용 도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시장 (군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출처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별표2, '15.10.25. 개정)

(세액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775	780	-	-	-	-	-	-	-
780	785	-	-	-	-	-	-	-
785	790	-	-	-	-	-	-	-
790	795	-	-	-	-	-	-	-
795	800	-	-	-	-	-	-	-
800	805	-	-	-	-	-	-	-
805	810	-	-	-	-	-	-	-
810	815	-	-	-	-	-	-	-
815	820	-	-	-	-	-	-	-
820	825	-	-	-	-	-	-	-
825	830	-	-	-	-	-	-	-
830	835	-	-	-	-	-	-	-
835	840	-	-	-	-	-	-	-
840	845	-	-	-	-	-	-	-
845	850	-	-	-	-	-	-	-
850	855	-	-	-	-	-	-	-
855	860	-	-	-	-	-	-	-
860	865	-	-	-	-	-	-	-
865	870	-	-	-	-	-	-	-
870	875	-	-	-	-	-	-	-
875	880	-	-	-	-	-	-	-
880	885	-	-	-	-	-	-	-
885	890	-	-	-	-	-	-	-
890	895	-	-	-	-	-	-	-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95	900	-	-	-	-	-	-	-
900	905	-	-	-	-	-	-	-
905	910	-	-	-	-	-	-	-
910	915	-	-	-	-	-	-	-
915	920	-	-	-	-	-	-	-
920	925	-	-	-	-	-	-	-
925	930	-	-	-	-	-	-	-
930	935	-	-	-	-	-	-	-
935	940	-	-	-	-	-	-	-
940	945	-	-	-	-	-	-	-
945	950	-	-	-	-	-	-	-
950	955	-	-	-	-	-	-	-
955	960	-	-	-	-	-	-	-
960	965	-	-	-	-	-	-	-
965	970	-	-	-	-	-	-	-
970	975	-	-	-	-	-	-	-
975	980	-	-	-	-	-	-	-
980	985	-	-	-	-	-	-	-
985	990	-	-	-	-	-	-	-
990	995	-	-	-	-	-	-	-
995	1,000	-	-	-	-	-	-	-
1,000	1,005	-	-	-	-	-	-	-
1,005	1,010	-	-	-	-	-	-	-
1,010	1,015	-	-	-	-	-	-	-
1,015	1,020	-	-	-	-	-	-	-
1,020	1,025	-	-	-	-	-	-	-
1,025	1,030	-	-	-	-	-	-	-
1,030	1,035	-	-	-	-	-	-	-
1,035	1,040	-	-	-	-	-	-	-
1,040	1,045	-	-	-	-	-	-	-
1,045	1,050	-	-	-	-	-	-	-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1,050	1,055	-	-	-	-	-	-	-
1,055	1,060	-	-	-	-	-	-	-
1,060	1,065	1,040	-	-	-	-	-	-
1,065	1,070	1,110	-	-	-	-	-	-
1,070	1,075	1,180	-	-	-	-	-	-
1,075	1,080	1,250	-	-	-	-	-	-
1,080	1,085	1,320	-	-	-	-	-	-
1,085	1,090	1,390	-	-	-	-	-	-
1,090	1,095	1,460	-	-	-	-	-	-
1,095	1,100	1,530	-	-	-	-	-	-
1,100	1,105	1,600	-	-	-	-	-	-
1,105	1,110	1,670	-	-	-	-	-	-
1,110	1,115	1,740	-	-	-	-	-	-
1,115	1,120	1,810	-	-	-	-	-	-
1,120	1,125	1,880	-	-	-	-	-	-
1,125	1,130	1,950	-	-	-	-	-	-
1,130	1,135	2,020	-	-	-	-	-	-
1,135	1,140	2,090	-	-	-	-	-	-
1,140	1,145	2,160	-	-	-	-	-	-
1,145	1,150	2,230	-	-	-	-	-	-
1,150	1,155	2,300	-	-	-	-	-	-
1,155	1,160	2,370	-	-	-	-	-	-
1,160	1,165	2,440	-	-	-	-	-	-
1,165	1,170	2,500	-	-	-	-	-	-
1,170	1,175	2,570	-	-	-	-	-	-
1,175	1,180	2,640	-	-	-	-	-	-
1,180	1,185	2,710	-	-	-	-	-	-
1,185	1,190	2,780	-	-	-	-	-	-
1,190	1,195	2,850	-	-	-	-	-	-
1,195	1,200	2,920	-	-	-	-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사업명 :

사업기간 : 2016. . . . ~ . . . .

사업관리부서 : 시(군·구) 과

사업관리 담당자 :

사업장 현장관리자(작업반장) :

작업자 : (성명) (주소)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b>날짜</b>					<b>10/1</b>	<b>10/2</b>	<b>10/3</b>
작업자					홍길동	홍길동	
작업반장					김마을	김마을	
담당공무원					이공방	이공방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b>날짜</b>	<b>10/4</b>	<b>10/5</b>	<b>10/6</b>	<b>10/7</b>	<b>10/8</b>	<b>10/9</b>	<b>10/10</b>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b>날짜</b>	<b>10/11</b>	<b>10/12</b>	<b>10/13</b>	<b>10/14</b>	<b>10/15</b>	<b>10/16</b>	<b>10/17</b>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b>날짜</b>	<b>10/18</b>	<b>10/19</b>	<b>10/20</b>	<b>10/21</b>	<b>10/22</b>	<b>10/23</b>	<b>10/24</b>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b>날짜</b>	<b>10/25</b>	<b>10/26</b>	<b>10/27</b>	<b>10/28</b>	<b>10/29</b>	<b>10/30</b>	<b>10/31</b>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 결산	총 근무일수 : 20일						
	참여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 1일, 지각 1회(2시간), 조퇴 1회(4시간) 총작업시간 : 154시간【(18일*8시간=144시간)+(8시간-2시간=6시간)+(8시간-4시간=4시간)】					

※ 출석확인 : 매일 근로자와 작업반장은 작업시작시, 사업담당공무원은 작업시작시 또는 현장확인 점검시

##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 □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 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li> <li>-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li> </ul>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li> </ul>
법제38조2	석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li> </ul>
법제38조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 (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li> </ul>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li> <li>-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li> <li>-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li> <li>-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li> </ul>
법제43조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li> <li>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li> </ul>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지역전통기술 습득 사업	○ 지역특산물 가공작업/ 공예품 제작시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가공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②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	○ 재봉작업, 제품제작 시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재봉작업, 제품제작 시 안전화, 장갑 착용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음식조리 중 뚜껑을 열다가 스팀에 화상, 계단 등을 통행중 넘어짐	○ 뜨거운 조리기구를 다룰 경우 안전장갑 착용, 안전통로 확보 등
	○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물기를 수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용 신발(장화) 착용
	○ 과도한 물량이나 계단 통행시 넘어짐	○ 적정량 운반 및 계단 출입시 정신집중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을 부축, 운반, 이동시 보조기구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③ 자원재생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자원재생사업	○ 재활용 분리작업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분리수거 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손이나 발로 누르는 행위 금지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인력보조장비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공기압축기 폭발, 회전부에 감기거나 끼임	○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에 점검을 실시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기 등과 같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서 인출된 콘센트 등에 접속	

#### 4]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등)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재해	○ 누전차단기 부착 전원에 접속 사용
	○ 창문 교체·수리, 장판 운반 중 근골격계 질환	○ 창문 교체 및 수리 작업시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금지
	○ 작업장 바닥 적재물에 의해 걸려 넘어짐	○ 중량물 취급시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지붕 수리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및 지붕위에서 추락	○ 정리정돈 철저 및 실내장판, 도배작업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사용 ○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2인1조 작업, 지붕위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사용

#### 수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 시설활용사업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하부 넘어짐방지 조치, 안전모 착용
	○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하여 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중독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 수시로 환기 실시 및 방독마스크 착용 (지하공간 등 밀폐장소 작업시는 송기 마스크 착용)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한 보수 작업시 낙하, 찢림	○ 페인트·신나 등은 사용후 덮개 밀봉 ○ 보안경, 안전대(낙하방지용 벨트) 및 안전장갑 착용
	○ 자재 취급시 찢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수시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찢리거나 말림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길이나 계단 통행시 인도 턱(경계석)이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짐	○ 통행시 전방 주시 및 적절한 양의 물건 운반, 올바른 신발 착용
	○ 자전거길 풀 베기 등 작업 시 손, 발 베임, 찢림	○ 낫이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시 안전화와 안전장갑 반드시 착용
	○ 자재 취급시 찢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수시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찢리거나 말림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을 부축, 운반, 이동시 보조기구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엑셀 작성)

연번	시도	시군구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성별	사고 유형	사고 발생 내용	통계 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 확정	산재 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 여부 확정일
	합계										4	1	1	1	1	
1	서울시	종로구	김일동	2016-3-2	-	62	여	사망	넘어짐	사망	1	1				2016-5-2
2	서울시	종로구	홍행복	2016-3-3	-	57	남	중상	미끄러짐	추락전도	1		1			2016-6-20

**<작성요령>** : 제출시점까지 일어난 사고를 모두 제출(11월 말까지 월보를 보면 사업시작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어난 사고 모두를 제출)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 사고일 : 반드시 엑셀 날짜 형식으로 기록(2016-9-2 또는 2016/9/2)
4. 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콤보 상자내에서만 택일)
  - 사망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 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빠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배임찢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사망, 기타중에서 택일  
 \*주)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숫자1(숫자1일입)을 입력 - 숫자 1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것(특히공백, 스페이스바만 눌러지 말것)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sup>2)</sup>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b>1. 광업</b>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기타제조업	28
채석업	325	<b>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b>	10
석회석광업	76	<b>4. 건설업</b>	38
기타 광업	71	<b>5. 운수·창고 및 통신업</b>	
<b>2. 제조업</b>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항공운수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고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신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b>6. 임업</b>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b>7. 어업</b>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1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b>8. 농업</b>	27
시멘트 제조업	29	<b>9. 기타의 사업</b>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금속제련업	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금업	1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기계기구 제조업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교육서비스업	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b>0. 금융 및 보험업</b>	7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2015.12.31)」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및 결과 통보서(엑셀 작성)

연번	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비고	
	신청자		조회대상자			수급자 (부양자+ 피부양자)	구 분				
	성 명	건강보험증 번호	신청자와의 관 계	성 명	건강보험증 번호		지역	직장			최종월 부과금액(원)
1	김순돌	-	부	홍길동	-	5		0	23,120원	동의	

## &lt;작성요령&gt;

- 1)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 및 조회대상자의 자료를 작성
- 2)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서는 수급자(부양자+피부양자), 지역 및 직장 구분과 최종월 부과금액(원)을 확인하여 작성
-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4)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단에서 신청서를 신청인원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음
- 5) 건강보험증 앞 번호가 '5 또는 6'으로 시작되면 공무원 또는 교원 가족으로 구분
  - \* 다만 앞번호가 '5 또는 6'으로 시작되더라도 모두가 공무원이나 교원은 아니며, 비정규직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가 입증책임 있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② 혼동하기 쉬운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사설 학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2)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201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자르는 선 .....

## 제 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위와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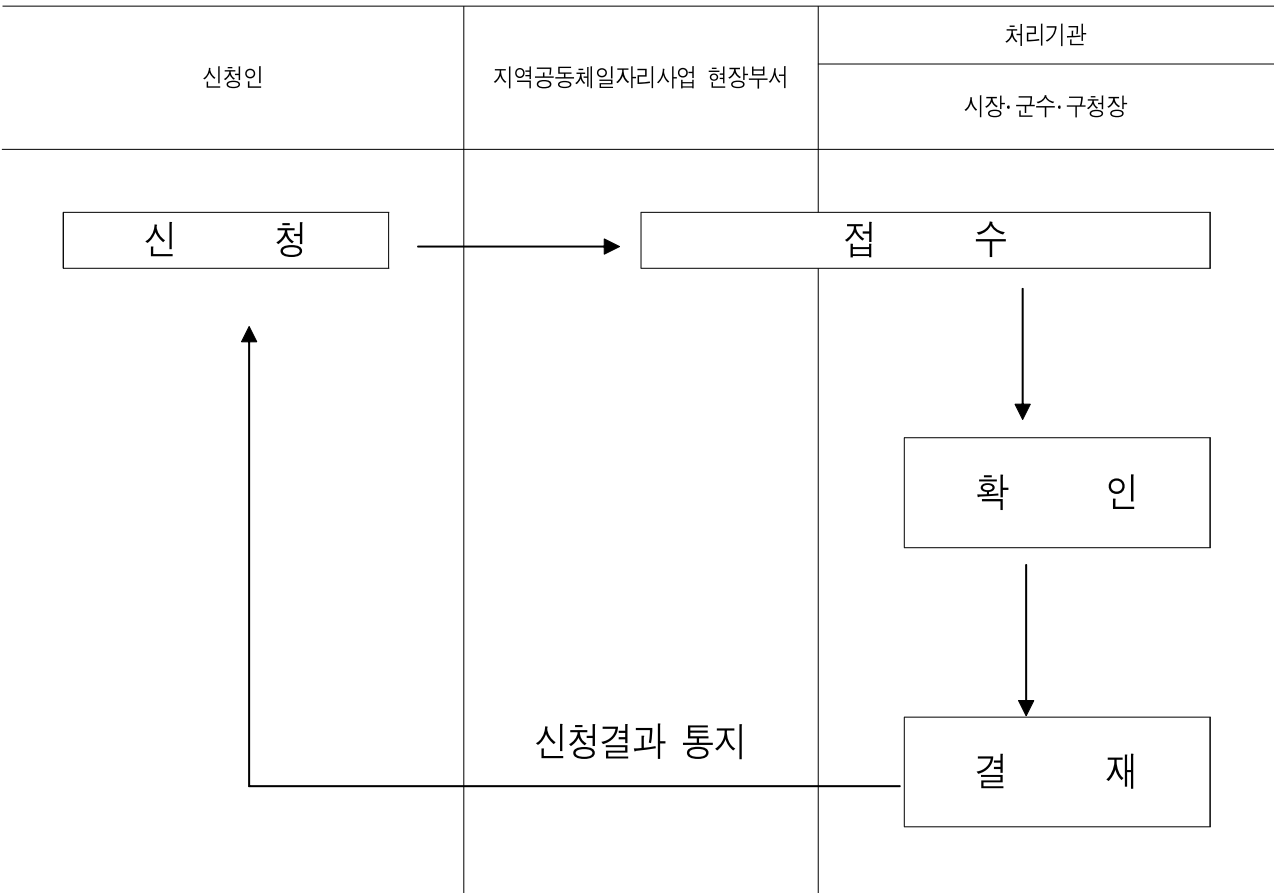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 의 사 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은 사업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